

등록번호	노인장애인과-47651
등록일자	2025. 12. 29.
결재일자	2025. 12. 29.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노인장애인과장	주민복지국장
김선정	홍채순	나기일	안명옥
협조자	전결 2025. 12. 29.		

장애인등록증 발급수수료 지원 계획

결재요지

- 추진목적: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시기) 2026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2026년부터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서구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신분증형(일반/통합) 장애인등록증 발급수수료
 - (소요예산) 6,400천원(구비 100%)
 - (예산과목) 장애인 정책운영-201일반운영비-01사무관리비-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주 민 복 지 국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

장애인등록증 발급수수료 지원 계획

-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과 관련하여 IC등록증(IC칩이 내장된 등록증)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를 지원

I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II 추진 배경

-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4,000원) 개인부담금 구비 지원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발급자간 형평성 문제 해소등 장애인의 편의 증진 도모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시
 - 2026년 1월 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IC칩 대금 비용 필요

III 등록증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 1. 1. ~
- 지원대상: 2026년부터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서구 등록 장애인
- 시행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 지원방법: 장애인등록증 대금지급 신분증형(일반/통합)
- 지원내역: 신분증형(일반/통합) 장애인등록증 1장당 4,500원
 - ※ 금융카드형(일반/통합) 장애인등록증은 현행과 같이 신한카드사 전액 부담
- 납부방법: 한국조폐공사가 매월 말 각 시군구로 청구(공문 발송)
 - 시군구에서 청구 내역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
 - * 현재 각 시군구가 조폐공사에 본인부담금(4천원) 등 납부하는 방법과 동일
- 소요예산: 6,400천원(구비 100%)
 - (산출기초) 1,400건(사업량)×4,500원(발급수수료) ≒ 6,400,000원

현행(일부 면제)			개선(전부 면제)	
일반카드	장애인등록증(A형)	수수료 없음	장애인등록증 (A형:4500원)	지원
	장애인복지카드 (B형:직불, 신용카드)		장애인복지카드 (B형:직불, 신용카드)	면제
고속도로 할인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신분증형)	4,000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4500원)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 신용, 직불카드)	면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 신용, 직불카드)	면제
- 현행: (민원인) 수수료 납부 → (동) 현금 수령 → (동) 동 세입세출외 계좌에 입금 → (동) 매월 구 세입세출외 계좌로 수수료 반환 보고 및 입금 → (구) 조폐공사 납부 - 개선: (구) 조폐공사 납부				

IV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① (전단 생략)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5.10.23일 시행)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확정안)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전이며 추후 공포안 재공지 예정)

제4조(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신분증형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등록증(이하 "IC 등록증"이라 한다)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거쳐 기존의 등록증을 반납(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등록증이 훼손되어 기재사항을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선택을 바꾸어 신분증형 등록증 또는 금융카드형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4.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5. 금융카드형 등록증의 결제 기능 또는 IC등록증의 칩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6.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장애인의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7. 등록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하는 등록증이 신분증형 등록증인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천원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1천원. 다만, 제5호의 경우 발급일부터 1년 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장애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거쳐 해당 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수료 징수 대상이 되는 재발급의 경우에 장애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교부 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제4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2(모바일 등록증)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효한 등록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읍·면·동장을 통해 모바일 등록증 발급의 근거가 되는 제1항제1호의 등록증(이하 '기본등록증'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기본등록증이 IC등록증인 경우: 해당 등록증에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모바일 등록증 발급 기능을 활성화 함

2. 기본등록증이 IC등록증이 아닌 경우: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QR코드를 생성하여 해당 장애인이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해당 앱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함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2항에 따라 조치가 완료된 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등록증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④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교체하거나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모바일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조의3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등록증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모바일 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3(법정대리인등의 동의)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의 사용 신청을 하는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인 경우

2. 영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인 경우

제5조의4(모바일 등록증 회수 등) ① 법 제32조의3제4항의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2. 기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3. 기본등록증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신청됨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5.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모바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②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등록증의 기능이 정지된다.

1. 기본등록증을 분실하여 해당 장애인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를 알린 경우

2. 모바일 신분증 민원창구를 통해 해당 모바일 등록증의 도난·분실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제5조의2제2제3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모바일 등록증의 기능을 회복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정지된 모바일 등록증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 분실했던 등록증을 다시 찾아 이를 읍면동에 알린 경우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다시 찾아 분실 등의 신고를 취소한 경우

제4조의3(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①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이 등록증을 수령하기 전에 등록증 발급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거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이하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여 해당 장애인이 발급신청 확인 대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②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발급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해당 장애인이 등록증을 수령하기 전까지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V 동 협조사항

- 2025년 신청자까지 발급수수료 4,000원 징수, 2026년 신청자부터 발급 수수료 미징수하여 관리하고 추후 신청자별 구분요청시 협조
- 장애인등록증 관련 질의응답을 위한 네이버 카페 가입요청
(cafe.naver.com/mobilekoddi)

VI 행정사항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수수료 처리 방법 변경 내용을 동, 운영지원과 통보
- 2026년 1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자의 수수료를 지원
- 2026년 1월 16일 이후 신청한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 내장되어 있는 IC칩 발급비용 지원